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기업평가

2. 제재조치일 : 2026. 1.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운영 강화

한국기업평가㈜(이하 '회사')의 내규「평정회의자료 작성·제출요령」에 따르면 평가담당자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 개최 24시간 전까지 평정회의 자료를 평정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는 평정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제공한 시간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고 평정위에 참석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평정위에서 위원들이 논의·수정한 내용은 신용평가 시 중요사항이나, 최종 확정된 평가자료만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평정위 前·後 등 단계별로 평가자료 변경 내용 확인이 어렵고

평정위원의 신용등급에 대한 반대의견을 논의사항에 기재하지 않는 사례(1건)가 확인되는 등 평정위 운영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정위 前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시간을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평정위 前·後 등 단계별 자료 변경 내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반대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평가·영업조직 간 정보·인사교류 제한 강화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① 정보교류 제한 강화

회사의 영업담당자가 미공시된 기업 신용등급을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고, 사내 공유폴더에 저장된 과거 신용평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등 정보 교류 제한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영업담당자의 미공시 신용등급에 대한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내규 등으로 공유폴더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사교류 제한 강화

회사의 영업담당자의 평가조직으로의 이동은 내규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평가담당자의 영업조직으로의 이동은 제한이 없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평가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 및 영업조직 간 인사교류의 제한을 내규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이사 확인서 징구절차 강화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때,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 등이 없음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평가대상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을 평가대상회사 직인으로 받고 있어 대표이사의 직접 확인·검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대표이사 확인서를 본평가 시작 前 포괄하여 징구하고, 본평가 및 정기평가 자료 제출시에는 동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의 대표이사가 제출자료를 직접 확인·검토할 수 있도록 본평가 및 정기평가 자료제출시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확인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